

#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763
----------	------

발의년월일 : 2008. 10. 22 .

발 의 자 : 신항주 의원 외

11 인

## 제안이유

-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능 및 예·체능 계열의 특기생들이 안산시 장학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능 및 예·체능 계열의 학생으로서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자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안산시 우수 장학생 지급대상에 포함 시킴.(안 제4조 제1항 제1호 )

## 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동항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시 관내 고등학교·관외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성적 우수자(신입생은 입학성적순) 및 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신입생(고등학생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성적이 우수하여 출신 학교장이 추천한 자
- 나. 기능 및 예·체능 계열의 학생으로서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자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장학금지급대상) ①(생략)</p> <p>1.우수장학생 : 시 관내 고등학교·관외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성적 우수자(신입생은 입학성적순) 및 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신입생(고등학생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성적이 우수하여 출신 학교장이 추천한 자</p> <p>&lt; 신설 &gt;</p>	<p>제4조(장학금지급대상) ①(현행과 같음)</p> <p>1.우수장학생 : 가. 시 관내 고등학교·관외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성적 우수자(신입생은 입학성적순) 및 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신입생(고등학생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성적이 우수하여 출신 학교장이 추천한 자</p> <p>나. 기능 및 예·체능 계열의 학생으로서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자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p>

# 안산시 장학금 조례

[2003.10.17 조례제1089호]

개정	2004.11.22	조례제1155호
개정	2005.04.20	조례제1186호
개정	2007.04.26	조례제1311호
개정	2008.08.04	조례제14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복지증진 및 우수인력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등을 선발하여 안산시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말한다.
- 2."산업체근로자교육위탁"이라 함은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시 관내 산업체에 6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여 시 관내 대학에 전문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04.11.22, 2007.4.26>

제3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애향장학금, 산업체 근로자 장학금, 아이디어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2008.08.04>

제4조(장학금 지급대상) ①애향장학금은 장학금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우수장학생 : 가. 시 관내 고등학교 ·관외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성적 우수자(신입생은 입학성적순) 및 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신입생(고등학생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성적이 우수하여 출신 학교장이 추천 자<개정2004.11.22>
- 나. 기능 및 예·체능 계열의 학생으로서 도단위 대회 또는 전국단위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2.보람장학생 : 제5조에 의한 장학금 신청일 현재 시관내 기업체에 1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재산세 10만원이하 납부자에 한한다)의 자녀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개정 2004.11.22, 2007.4.26 >
- 3.희망장학생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자녀 및 기타 불우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출신 학교장이 추천한 자<개정2004.11.22>

② 산업체근로자교육위탁장학생은 장학금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출신학교장, 상공회의소회장 등이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2004.11.22, 2007.4.26>

③ 아이디어장학생은 장학금 신청일 현재 안산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시의 제안·공모 등에서 채택된 자로 한다. <신설2008.08.04>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기로 확정되었거나 받은 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2008.08.04>

제5조(공고 및 신청) ① 시장은 매년 장학금의 지급 규모·대상·범위 및 신청기간 등을 포함한 장학금지급계획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 등 요건을 갖추어 시장이 정한 기한내에 장학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 장학생의 선발 등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08.08.04>

제7조(기능) <삭제2008.08.04>

제8조(회의 등) <삭제2008.08.04>

제9조(장학생 선정) 시장은 제5조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6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애향장학금은 1년 단위로 선발 지급하고, 산업체근로자장학금은 장학생 선발시부터 졸업시까지로 하며, 아이디어장학금은 학기별로 선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4.26, 2008.08.04>

제11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2008.08.04>

1. 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다만, 아이디어장학생은 제외한다.) <개정2008.08.04>

2. 퇴학·정학·휴학처분 등을 받거나 군입대, 건강장애등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계속할 수 없을 경우(다만, 산업체근로자교육위탁장학생이 병역의무 이행후 복학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단서개정 2007.4.26>

3. 장학금지급 결격사유 발생등으로 추천권자의 정지신청이 있을 경우

4. <삭제2008.08.04>

5.보람장학생의 경우 부모가 관내 기업체에서 퇴사한 경우 <개정 2007.4.26>

6.산업체근로자교육위탁장학생의 경우 제2조제2호에 의한 산업체에서 퇴사한 경우(관내 타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2004.11.22, 2007.4.26>

제12조(장학금의 재원 및 지급액등) ①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의 규모 및 장학금 지급 인원은 전년도 지급실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장학금 지급액은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전액을, 대학생의 경우 수업료의 50퍼센트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이디어장학금 지급액은 아이디어의 종류 및 채택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업료를 지급받는 자는 수업료 대신에 학교운영지원비, 교재비 및 기타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개정2008.08.04>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등은 일반회계로 이입한다.

④(위원회 구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안산시장학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안산시장학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2004.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5.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7.0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8.08.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폐지 등) 안산시 장학금 심의위원회는 폐지되고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763
----------	------

제안년월일 : 2008. 11. 13 .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기능 및 예·체능 계열의 우수학생들이 안산시 장학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함.

## 주요골자

- 기능 및 예·체능 계열의 우수학생들이 안산시 장학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

#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능 및 예·체능 계열의 우수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신·구 조문 대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4조(장학금지급대상) ①(생 략)</p> <p>1.우수장학생 : 가. (생 략)</p> <p>나. <u>기능 및 예·체능 계열의 학생으로서</u> <u>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자</u> <u>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u></p>	<p>제4조(장학금지급대상) ①(원안과 같음)</p> <p>1.우수장학생 : 가. (원안과 같음)</p> <p>나. <u>기능 및 예·체능 계열의 우수학생으</u> <u>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u></p>